

2026년도 제4차 교육연구위원회 회의록

I 개 요

- 일 시 : 2026. 3. 24.(화) 10:00~11:00
- 장 소 : 1호관 영상회의실
- 참석현황 : 재적위원 20명 중 참석 18명, 불참 2명
 - 참석위원(18명)
 - 이인재(위원장), 최병조(부위원장), 이준한, 허 진, 안치영, 김장균, 김태성, 성영애, 김준동, 김우일, 황문현, 김평원, 김응철, 이승호, 강희찬, 김규원, 황병희, 이남식
 - 불참위원(2명)
 - 김영균, 이영수

II 회의 결과

- 제1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교수업적평가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안건요지 [제출자: 교무처장]

1. 제안사유

- 가. 인천대학교 교수업적평가 규정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신규 평가 항목을 발굴함으로써, 전임교원의 성취동기와 행정 만족도를 높이고
- 나. 아울러 단과대학의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하여, 각 단과대학의 고유한 교육·연구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는 업적평가제도로 개선코자 함

2. 주요내용

순번	구분	세부내용			적용 시점	
		세부 사항	평가 배점	영역		
1	평가 항목 신설	⑦ 교육가점에 글로벌강의(ES) 신설 - (ES)정의 : 영어 및 외국어로 강의교재와 자막을 제공하는 수업	2점 / 강좌	교육	2026년 1학기~	
		⑨ 저역서 평가항목에 초·중·고 교과서 신설	교양도서와 동일배점	연구		
		⑫ 우수저역서상 신설 -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또는 세종도서 추천도서 선정작	100점/건			
		②-2 교내봉사 보직에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장 신설	6점/년	봉사		
		⑬ 교수업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활동 신설	2점/건 최대 10점			
2	평가 항목 개선	현행 제20조(평가의 예외인정) 연구년교원 (교육, 봉사)영역 개인직전연도 점수 활동 가능	개정 제20조(평가의 예외인정) 연구년교원 (교육)영역 개인직전연도 점수 활동 가능	전체 적용	2026년 1학기~	
		⑰⑱ 박사/석사 논문심사 및 지도 - 평가기간 지도학생 한하여 인정하며, 대학원수업관리 시스템과 연동하여 일괄평가 한다.	⑰ 박사/석사 논문심사 - 평가기간동안 수행한 논문심사 한하여 인정하며, 대학원 수업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일괄평가 한다.	교육	[2025년 업적평가 적용]	
		CS분야 BK21학술대회 및 한국정보과학회 우수학술대회 - 학술활동 : 국제학술대회논문 (0점~15점) 배점	CS분야 BK21학술대회 및 한국정보과학회 우수학술대회 - 학술활동 : 국제학술대회논문 SCIE급 논문배점(100점) 기준시용	연구	2026년 1학기~	
		⑰ 사업화 및 벤처 창업	⑰ 벤처 창업	산학	2026년 1학기~	
3	평가 배점 변경	구분	현행	개정	영역	
		가점	⑩교양 강의 2점/강좌	⑩교양 강의 5점/강좌	교육	[2025년 업적평가 적용]
		산학 협력 교육 활동	⑤ 계약 학과 (개발/운영)	⑤ 계약 학과 개발 ⑤ 계약학과 강의시간	책임교수 : 20점 참여교수 : 10점 산학	[2025년 업적평가 적용]

			<u>20점/참여인원</u>	계약 학과 운영	<u>-이론강의 1시간당</u> 2점 <u>-실험실습 1시간당</u> 1.5점 <u>-실기시험 1시간당</u> 1.5점		
	그 외 기타사항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 적용시점

- ① 기본원칙 : 신규개발항목 및 변화가 큰 항목은 2026년 1학기부터 적용하여 2026년 업적평가부터 반영한다.
- ② 단, 現 규정 해석 문제로 인해 정의를 수정하거나, 기존 평가항목의 배점만 조정하는 사항은 2025년 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3. 참고사항

- 2025.10.20. : 전 구성원(교무과제외) 규정 개정요구사항 보고
- 2025.10.27. : 교무과 규정 개정요구사항 보고
- 2025.10.30. : 개정요구사항 중 결정 필요사항 본부회의 보고
- 2025.11.10. : 단과대학 규정 개정요구사항 보고
- 2025.11.11. : 단과대학 규정 개정요구사항 답변 요청 (교무과 → 단과대학)
- 2025.12.8. : 단과대학 규정 개정요구사항 답변 회신 (단과대학 → 교무과)

[비고] 단과대학 개정 요구사항은 본부 회의 제언 사항을 반영하여, 각 단과대학 및 성과급 평가단위에서 전체동의를 내용만 개정 진행함

- 2026.1.7. : 인천대학교 교수업적평가 규정 일부개정 계획(안)
- 2026.1.13. ~ 2026.1.19 : 전부서 의견조회
- 2026.3.5 : 일부개정규정안 제출의견 검토결과 보고
- 2026.3.6 : 법인법무과 사전심사 의뢰

○ 심의결과: 원안가결

□ 제2호 심의안건: 2026학년도 학사운영 계획 변경안

○ 안전요지 [제출자: 교무처장]

1. 제안사유

- 2026년부터 7월 17일 제헌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본교 학사일정 중 해당 일자를 정기휴업일로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7월 17일(제헌절)을 정기휴업일로 지정하여 2026학년도 학사일정에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국경일의 종류) / 행정안전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인사혁신처(2026.2.10.)
- 「인천대학교 학칙」 제26조(정기휴업)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본부회의 보고 : 2026.03.16.(월)
- 교무회의 보고 : 2026.03.17.(월)
- 총장 방침 : 2026.03.17.(월)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 2026.03.24.(화)

○ 심의결과: 원안가결

□ 제3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안전요지 [제출자: 교무처장]

1. 제안사유

- 가. 교육부 계약학과 운영 매뉴얼에 따라 폐지 대상인 학과를 폐과하고 계약학과 운영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함
- 나. 교육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지 계약학과 삭제(안 별표1)

- 2023년 학과명 변경 이후 입학생이 없어 학과 폐지 진행

대학(원)	학과명	정원	학위명	과정	유형	비고
대학원	사회적경제학과	10	경제학석사	석사	재교육형	폐지
계	1개학과	10명				

- [별표 1] 계약학과 명칭·학생정원·학위명 삭제

대학 / 대학원	학과명	입학정원	수여 학위
글로벌정경대학	글로벌무역물류학과	15명(신입학)	물류학사
경영대학	테크노경영학과	20명(편입학)	경영학사
도시과학대학	도시건설공학과	20명(편입학)	공학사
대학원	사회적경제학과	10명	경제학석사
	녹색환경융합학과	20명	환경융합학공학석사
		5명	공학박사

나. 이동수업 명칭 변경(안 제9조제2항 및 제19조제5항제6호)

-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에 따라 기존의 ‘이동 수업’을 ‘협동수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타법령과 용어를 일원화함
- 교육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용어 변경

제9조(수업)

② **협동수업**의 경우 계약산업체에서 교육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모체학과 소속 교원의 70%이상 동의를 얻어 본교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하에 운영할 수 있으며, **협동수업**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한다.

1. **협동수업** 장소는 동일한 권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2. **협동수업** 장소의 시설설비는 수업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강의실 및 교육기자재 등 관련 시설을 구비하고 소방관련 법규 준수 등 안전한 교육여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협동수업** 장소에는 자동 출결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출결기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4. **협동수업** 교과목의 특성과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본교에서의 수업과 적정하게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본교에서와 같은 수준의 강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학과 운영위원회)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6. 계약학과 **협동수업**의 운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본부회의 보고 : 2026. 2. 2.(월)
- 교무회의 보고 : 2026. 2. 3.(화)
- 총장 방침 : 2026. 2. 5.(목)
-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심의 : 2026. 2. 23.(월) ~ 2. 25.(수)
- 의견 수렴 : 2026. 3. 3.(화) ~ 3. 9.(월)
- 사전 심사 : 2026. 3. 11.(수)

○ 심의결과: 원안가결

□ 제4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계약학과 운영 세부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안전요지 [제출자: 교무처장]

1. 제안사유

가. 교육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동수업 명칭 변경(안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조제2항제2호)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용어 변경

제2조(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학과)

③ 학과 신설의 경우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2.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바. 계약학과 이동수업 협동수업의 운영

제3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재교육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학과)

② 신설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바. 계약학과 이동수업 협동수업의 운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 「인천대학교 계약학과 운영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본부회의 보고 : 2026. 2. 2.(월)

○ 교무회의 보고 : 2026. 2. 3.(화)

○ 총장 방침 : 2026. 2. 5.(목)

○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심의 : 2026. 2. 23.(월) ~ 2. 25.(수)

○ 의견 수렴 : 2026. 3. 3.(화) ~ 3. 9.(월)

○ 사전 심사 : 2026. 3. 11.(수)

○ 심의결과: 원안가결

□ 제5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해양수산산업연구원 운영지침 제정지침안

○ 안전요지 [제출자: 연구처장]

1. 제안사유

서해안의 해양산업을 주도할 거점대학으로서의 발전을 위해 해양 환경, 수산, 로봇, 물류, 레저 등 해양산업 발전 및 산학협력을 위한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의 설립 목적과 역할을 구체화하고, 조직 운영과 재정관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연구원의 사업 범위(안 제3조)
- 나. 연구원의 조직(안 제4조 ~ 제9조)
- 다.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안 제7조)
- 라. 연구원의 재정(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인천대학교 연구구성위원회 설립 승인 (2026. 2. 23.)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관련일정

- 연구구성위원회 심의 : 2026. 2. 23.(월)
- 본부회의 보고 : 2026. 2. 23.(월)
- 교무회의 보고 : 2026. 3. 3.(화)
- 총장 방침 : 2026. 3. 5.(목)
- 의견조회 : 2026. 3. 5.(목) ~ 3. 11.(수)
- 사전심사 : 2026. 3. 17.(화)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 2026. 3. 24.(화)

라. 첨부자료

- 인천대학교 해양수산산업연구원 운영 지침 제정지침안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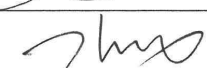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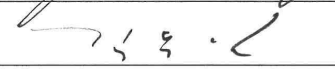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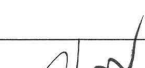
○ 심의결과: 수정가결

2026년도 제4차 교육연구위원회 회의결과

구 분	안 건 명	심의결과	
심 의	4-1	인천대학교 교수업적평가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 안 가 결
	4-2	2026학년도 학사운영 계획 변경안	원 안 가 결
	4-3	인천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 안 가 결
	4-4	인천대학교 계약학과 운영 세부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원 안 가 결
	4-5	인천대학교 해양수산산업연구원 운영지침 제정지침안	수 정 가 결

2026년 제4차 교육연구위원회 서명부

1. 일 시 : 2026. 3. 24.(화) 10:00
 2. 장 소 : 대학본부 5층 영상회의실

연번	구분	직위	성명	서명
1	위원장	총장	이인재	
2	부위원장	교학부총장	최병조	
3	위원	기획부총장	이준한	
4	위원	대학원장	허진	
5	위원	인문대학장	안치영	
6	위원	자연과학대학장	김장균	
7	위원	사회과학대학장	김태성	
8	위원	글로벌정경대학장	성영애	
9	위원	공과대학장	김준동	
10	위원	정보기술대학장	김우일	
11	위원	경영대학장	김영균	
12	위원	예술체육대학장	황문현	
13	위원	사범대학장	김평원	
14	위원	도시과학대학장	김용철	
15	위원	생명과학기술대학장	이승호	
16	위원	교무처장	강희찬	
17	위원	학생·취업처장	이영수	
18	위원	기획처장	김규원	
19	위원	연구처장	황병희	
20	위원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이남식	